Section 10(6)과 주식 플랜 규칙의 토큰 적용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싱가포르에는 임직원 주식 플랜에 관한 특별 제도가 있습니다. Section 10(6)은 주식을 취득할 권리, 즉 옵션과 주식 보상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행사 또는 베스팅 시점에 과세합니다. 과세 금액은 그 시점의 주식 시장가치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것입니다. 주식에 매각 제한이 있는 경우 과세 시점은 제한이 해제되는 날로 이연되며, 가치도 그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이 제도는 회사의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주식이 아닌 토큰은 Section 10(6)의 범위 밖에 있으며, 앞서 설명한 Section 10(1)(b)의 일반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 차이는 토큰 옵션과 토큰 워런트에서 중요합니다. 행사가격으로 토큰을 매수할 옵션을 보유한 근로자는 옵션 행사 시점에 일반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때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토큰 가치에서 행사가격을 뺀 것입니다. 이 결과는 Section 10(6)이 낳는 결과와 같습니다. 차이는 매각 제한에서 나타납니다. Section 10(6)은 제한부 주식의 과세 시점을 제한 해제 시점으로 이연합니다. 일반 규칙에는 그러한 이연이 없으므로 락업된 토큰은 수령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토큰 플랜에 이연을 원하는 회사는 락업이 끝났을 시점까지 토큰을 인도하지 않도록 플랜을 설계해야 하며, 이는 실무상 락업 대신 베스팅 일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형 토큰은 Section 10(6)의 목적상 주식입니다. 이 조항은 형식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허가형 원장에서 주식을 토큰화하고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옵션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회사는 Section 10(6), 간주 행사 규칙 및 QEEBR 이연이 모두 적용되는 주식 옵션 플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지분의 토큰화는 싱가포르에서 세무상 중립적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채무법 제973d조 이하에 따른 원장 기반 증권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제D편 제III장 참조).

사례

싱가포르의 한 프로토콜 회사가 2025년 1월 입사한 엔지니어에게 4년에 걸쳐 매년 분할 베스팅되는 거버넌스 토큰 10만 개를 부여합니다. 토큰 가격은 부여 시점에 0.50 싱가포르달러, 첫 2만 5,000개가 베스팅되는 2026년 1월에 3.00 싱가포르달러입니다. 엔지니어는 2027 과세연도에 7만 5,000 싱가포르달러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2025년 1월에 1년간 온체인 락업을 걸고 토큰 2만 5,000개를 즉시 부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우 엔지니어는 락업에 대한 할인을 전제로 2026 과세연도에 1만 2,500 싱가포르달러의 소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의 상승분 6만 2,500 싱가포르달러는 그가 투자자라면 자본이득이 됩니다. 토큰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는 두 번째 설계가 엔지니어에게 유리합니다. 회사는 이를 나중에 가치가 0으로 떨어질 토큰에 세금을 내야 할 위험과 비교해야 하는데, 베스팅 설계는 이 위험을 피합니다.

주

1. Income Tax Act 1947, s. 10(6)(고용을 이유로 부여된 회사 주식 취득 권리 또는 혜택에서 발생하는 이득 또는 이익, 행사·양도·포기 시점 또는 매각 유예 해제 시점에 과세).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